

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 일시: 9.15(목) 석간,
<인터넷 9.15(목) 10:00 이후>
- ▶ 총 7 쪽

❖ 여성고용정책과 과 장 정 경 훈
사무관 김 동 현
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김 종 윤
사무관 박 원 아

☎ 02-2110-7293
02-6902-844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9.2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시행

- 9.15(목)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

- 9월 22일부터 육아기에 휴직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: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~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)

- 고용노동부는 최근 「고용보험법」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기존에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만 「고용보험법」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,

- 이번 고용보험법령 개정으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(통상임금의 40%)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받게 되며,

* 산정 예: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15/40

○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.

□ 이 외에도 개정된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(별첨 참조)

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을 신청할 때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*에서도 할 수 있고,

* 취업희망지, 퇴직 전 사업장 소재지, 거주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곳 관할 고용센터

-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신청은 정보화 흐름에 맞추어 워크넷 홈페이지(www.work.go.kr)를 통하여 하도록 명문화하였다.
- 이와 관련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②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귀국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구직급여 부정행위 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추가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세분화하여, 일용근로자,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추가징수 금액을 면제하거나 줄일

수 있도록 하였다.

* 현행: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의 100%를 추가징수→ 개정: 면제 또는 30~100%를 추가징수

④ 별정직·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시기를 '해당 소속 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'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.

⑤ 근로자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「내일배움카드제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* '11.9.9 발표된 「비정규직 종합대책」에 따라 지원금액도 현행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

□ 이번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시행되면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·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,

○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신청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참고>

고용보험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
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-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급여액 산정 등 위임사항 규정

현 행	개정안
· 신설	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$\text{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} \times \frac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 - \text{단축 후 소정근로시간}}{\text{단축 전 소정근로시간}}$

2. 거주지 관할 이외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허용

- 민원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실업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업무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
- 구직신청을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도모 및 행정력 절감

현 행	개정안
· 자신의 <u>거주지</u> 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	·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- 민원인의 편의상 필요한 경우(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)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
· 구직신청을 <u>서면</u> 으로 함	· 구직신청을 <u>인터넷</u> 으로 함

3. 배우자 동거목적 해외체류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(정지) 허용

- 배우자와 동거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직 후 12개월이 도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민원 야기 → 수급기간 연장(정지) 사유에 추가

*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로 하되, 임신·출산·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4년까지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현 행	개정안
· (수급기간 연장사유) 임신, 출산, 육아, 본인·배우자 등의 질병 또는 부상, 의무복무,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	· 「배우자의 해외발령 등에 따라 동거의 목적으로 거소 이전」 추가

4.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을 세분화

- 구직급여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

*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신청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타 부정수급과 같이 배액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

- 부정수급 행태에 따라 현행 2단계(면제·배액징수)에서 4단계(면제, 부정수급액의 30, 60, 100% 추가징수)로 차별화

현 행	개정안
· (면제) 부정행위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, 경미한 부정행위 (1회에 한함)	·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
· 부정행위액의 100%	(부정행위액의 30%)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3일 이내로 초과(12일 까지)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부정행위액의 60%) 부정행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확약한 경우 (부정행위액의 100%) 그 밖의 사유

5.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가입 시기 명확화 (임용→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 임용)

- 임의가입 제도 하에서 가입기간 적용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, 임용을 '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'으로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 방지

현 행	개정안
·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신청해야 함	·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을 신청해야 함

6.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통합

- 개인 지원 직업능력개발 관련 3개 사업*을 2개로 통합

현 행	개정안
<근로자 수강지원금> ·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, 이직예정의 근로자가 자기비용으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비용 지원	<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> ·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,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 근로자가 자기비용으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비용 지원
<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> ·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고, 훈련을 수강한 경우 비용 지원	<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> ·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관련 내용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및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
<실업자의 취업훈련(내일배움카드제)> ·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훈련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	<취업훈련의 지원(내일배움카드제)> · 실업자,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, 이직예정자,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자의 창업, 전직 또는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훈련 실시 가능

7.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 폐지

- '11.7.1부터 주40시간제가 전면 적용되었으므로, 법정 의무 단축일보다 6개월 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관련 규정은 삭제

8. 지원금의 지급제한

-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고용안정사업과 다른 고용관련 지원금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

현 행	개정안
· 신설	· 「북한이탈주민보호법」, 「산재보험법」, 「장애인고용법」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사업주가 근로자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 제한